

世宗代의 楮貨流通策

權 仁 赫

< 目 次 >

- I. 머 리 말
- II. 世宗初期의 楮貨 流通狀況과 興用策
 - 1. 流通狀況
 - 2. 興用策
- III. 楮貨 專用策의 變化와 楮貨 地位
- IV. 楮貨의 復用과 流通策
- V. 맺 음 말

I, 머 리 말

朝鮮王朝 개창이후 줄기차게 전개된 정치, 경제적 개혁 등 일련의 中央集權化 努力은 世宗代 (1418 ~ 1450)의 국력신장과 찬란한 문화 건설을 가능케 하였다. 세종은 정치가로서의 소양뿐만 아니라 학문적 자질도 具有한 군주로서 이 시기의 발전은 私田에 대한 억압책과 貢法制의 마련, 학문의 발달, 훈민정음의 제정 반포, 영토의 확대 등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제도의 정비와 국토의 확대, 문화상의 찬란한 위업이 전개될 때 前代에서 유통시키고자 했던 楮貨는 어떠한 존재 양태를 보여주고 있었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당시의 사회·경제적 양상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사를 던져 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楮貨는 실질가치가 결여되고 명목가치만 지닌 紙幣이기 때문에, 그것을 발행하는 정부와 이를 사용하는 백성들 사이에 일종의 약속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그것의 자연스런 유통이란 이미 제약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즉 楮貨가 통용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선결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이다.

本稿는 바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세종대의 楮貨와 관련된 일련의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當代의 사회·경제적 양상의 일단을 알아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방면에 관련된 기왕의 연구 업적을 살펴보면 한국화폐사의 일부분으로 또는 朝鮮前期의 화폐제 내지 楮貨問題로 국한해서 취급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충분한 해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¹⁾ 필자는 일찌기 朝鮮前期의 화폐유통을 구명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太宗代의 楮貨流通問題를 거론한 바 있었는데²⁾ 이 글은 그 후속작업이 될 것이다.

본고는 당시의 저화유통에 관한 이해의 편의를 위해 楮貨專用, 銅錢專用, 楮貨復用이라는 화폐정책상의 변화에 유의하여 세종초기의 저화 유통상황과 흥용책 그리고 저화 전용책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저화의 지위, 이어서 저화의 복용문제와 그 유통책을 살펴 보았다. 이 때 저화 전용책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동전문제도 아울러 고찰해야 하겠지만 이 문제는 후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어서 여기서는 간략히 취급했음을 미리 밝혀둔다.

II. 世宗初期의 楮貨流通狀況과 興用策

1. 流通狀況

太宗時 民生의 안정과 화폐발행권의 장악을 위한 楮貨의 일방적 통용시도는 그 노력에 상응함이 없이 楮貨의 가치하락만을 가져왔다.³⁾ 더우기 잇따라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自然經濟下에 드러나 있는 백성들의 생활과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재정을 근저로부터 위협하는 것이었기에 저화의 유통은 이미 일정한 제약하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太宗 14, 15, 16년에 연이어 到來된 흉작과 기근발생에 의한 민생파탄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정부대책 중 저화통용을 위해 실시했던 楮貨收納策을 크게 후퇴시켰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⁴⁾ 그러나 저화 가치가 하락하고 그 유통책이 제약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楮貨의 存·廢問題에까지 이르지 않은 것을 보면 저화는 이미 자신의 지위를 어느 정도 확보한 것 같다. 즉 세종 즉위년에 戶敕楮貨法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을 적에

初立戶敕楮貨之法 實是興行楮貨權宜之策 今楮貨既流行 歲且飢饉 請革此法 以恤民生 上從之⁵⁾

- 1) 柳子厚, 1940. 《朝鮮貨幣考》(學藝社)
- 李能植, 1949. 《麗末鮮初의 貨幣制度》《震檀學報》16
- 李鍾英, 1962. 《朝鮮初 貨幣制의 變遷》《人文科學》7
- 崔虎鎮, 1974. 《韓國貨幣小史》(瑞文堂)
- 田村專之助, 1937. 《高麗末期에 있어서 楮貨制 採用問題》《歷史學研究》7~3
- 宮原兎一, 1954. 《朝鮮初期의 楮貨에 대하여》《東洋史學論集》3
- 2) 權仁赫, 1982. 《朝鮮初期 貨幣流通 研究—특히 太宗代 楮貨를 中心으로—》《歷史教育》32
- 3) 太宗 2年 正月 新造楮貨 時, 楮貨 對 五升布의 교환비가 1:1이었던 것이 동 16년 8월에 5:1로 되었다.
- 4) 李鍾英, 《上揭論文》310
- 5) 《世宗實錄》卷1, 卽位年 10月 己卯, 司諫院上疏曰

와 같이 저화홍행을 위해 임시로 마련한 戶楮貨가 이미 既流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존속 필요성이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그리고 銅錢不用에 따른 鐵錢 行用問題가 거론되었을 때 “비록 다른 용도가 없는 楮貨라 할 지라도 백성들이 興用했었는데 장차 이 鐵錢에 있어서라”의 내용에서,⁶⁾ 이 시기에 저화의 日常的 유통을 想定할 수 있다. 이러한 저화의 유통 양상은

今後凡得遺失小兒者 悉送濟生院 戶曹給糧以養之 父母之失兒者 亦詣濟生院尋之 官徵父母 楮貨三十張給得兒者 苟有匿不告者 里內管領及五家 並論罪 從之⁷⁾

에서 처럼 迷兒를 濟生院에서 보호하다가 그 부모에게 돌려보낼 때 저화 30 장의 징납을 가능케 했으리라 믿어진다.

당시 정부에서는 저화의 전국적 유통을 위해 各 官民들로부터의 歲貢楮貨·戶楮貨 수납을 시행하고 있었는데⁸⁾ 즉위년부터 발생된 자연재해는

道內禾穀 因風水之災 並皆不稔 而沿海州郡尤甚 諸浦水軍請糧于官者甚多(中略) 州郡所納楮貨 外方所無 皆交易於京中商賈 宜除今年所納楮貨 上皆從之 因命造醬及減楮貨事 並於失農諸道行移⁹⁾

慶尙道 지역의 當年 所納楮貨를 면제케 하고 그의 失農諸道는 피해정도에 상응한 적절한 감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이미 지속적인 시행을 곤란케 하였다. 더우기 各道 界首官 所在의 楮貨를 管內에 분포해서 저화의 지방 확산을 도모했던 조치는¹⁰⁾ 저화의 外方所無 현상이 제기됨에 따라 그 실효가 의문시되었고 지방에서 중앙으로 上納해야 했던 저화도

各戶楮貨之貢 本以楮貨興用而設也 遠道抽歛之際 倍價而納 其弊不小 且非法 宜令永除¹¹⁾

와 같이 그 抽歛時期를 맞이한 遠道에 있어서 倍價로 납부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저화의 원활한 유통은 이미 제약받고 있다.

한편 威鏡道 鏡城의 경우에는 女眞族 내왕에 관련된 소요경비의 증가로 인해 재정궁핍이 노정되자 중앙에 납부해야 할 歲貢楮貨의 감면을 요청하여¹²⁾ 이미 2/3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데¹³⁾

6) 《世宗實錄》卷 80, 20年 2月 丙寅, 領議政 黃喜 等曰

昔用楮貨之時 他無可用之處 民尚興用 況此鐵錢乎

7) 《世宗實錄》卷 1, 卽位年 8月 乙未, 漢城府啓

8) 歲貢·戶楮貨의 징수는 太宗代에서 비롯된다. 拙稿, 〈上揭論文〉110 ~ 112.

9) 《世宗實錄》卷 1, 卽位年 9月 乙亥, 慶尙道觀察使 申商啓

10) 《太宗實錄》卷 29, 15年 6月 庚寅, 前 漢城尹 閔繼生陳言

各道界首官所在楮貨 分送任內分布 使人人無上京貿易之弊(中略) 從之

11) 《世宗實錄》卷 17, 4年 8月 乙酉, 司諫院上疏曰

12) 《世宗實錄》卷 3, 元年 3月 辛未, 總制 黃象啓

鏡城 彼人來往不時 支應倍他 當減歲貢楮貨 上以問領議政柳廷顯 亦曰宜減

13) 《世宗實錄》卷 3, 元年 4月 癸巳條

이러한 흉년이나, 지방의 楮貨 皆無狀態 그리고 지방관아의 특수사정에 따르는 楮貨上納額의 減免과 같은 諸事實들은 분명히 저화의 꾸준하고도 전국적인 유통을 방해하는 것이었다. 또한 당시의 상인들은

今聞商賈不務用楮貨 予爲慮焉 其所以興行之術 議于政府六曹以聞¹⁴⁾

과 같이 저화사용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종전의 米·布와 같은 現物로 교역하고 있는 실정이어서¹⁵⁾ 백성들은 米를 구입할 때에 牛馬·布貨와 같은 현물을 거래수단수단으로 삼지 않으면 안되었다.

2. 興用策

楮貨가 太宗代의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인 유통책의 결과로 世宗代 初期에 어느 정도의 유통을 보게 되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京中을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에 국한된 현상이고 그외지역은 저화유통권에서 점차 멀어져 가고 있었다.¹⁶⁾ 그리고 설혹 京中 等地에서 저화가 유통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통수단으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

세종 11년, 綿布使用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을 적에

初立楮貨之法 凡買賣 禁用綿布 今憲司之吏 捕曳日多 人甚苦之(中略) 上曰卿言是矣 然不禁綿布 則全不用楮貨矣¹⁷⁾

에서 보는 바처럼 면포사용의 허락은 楮貨不用이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되어, 저화가치가 비록 甚賤해도 이에 대한 유통 노력을 계속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¹⁸⁾ 당시 자연경제 상황에서 凶歉 발생은 바로 빈민구휼책을 모색토록 하게 되는데 그 대책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저화유통 시도가 결부되어지기도 하였다. 즉 國庫米와 民間楮貨와의 상호교역을 통해서 빈민구제의 효과와 정부가 의도한 저화유통을 자연스럽게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세종 원년에

14) 《世宗實錄》卷7, 2年 2月 癸亥, 命戶曹叅判安純曰

15) 《世宗實錄》卷18, 4年 10月 丁酉, 以領議政府事柳廷顯 前判漢城府事黃喜 摠制田興爲京市署提調時 商賈皆不用楮貨 皆以米布買賣 物價踴貴 楮貨甚賤

16) 世宗7年4月 유통수단에서의 銅錢專用在 결정되고 나서 銅錢1千貫으로 給錢收楮策이 전개되었는데 그 중 5백관이 漢城府에, 그리고 留後司, 京畿地域에는 各50貫씩 할당되었다. 그 규모는 전체의 3/5에 해당되는 것이다.

17) 《世宗實錄》卷3, '元年 3月 辛未, 刑曹叅判 洪汝方啓

18) 《世宗實錄》卷3, 元年 4月 壬辰 視事

上問歲貢楮貨便否 許遲曰 楮貨甚賤 請申明之 上曰然

以軍資監陳米豆換楮貨 已有前例 初設此法者 欲楮貨之興行 而救貧乏之民也 今年若又凶歉 則民將仰食於國家矣 今依前例換楮貨 則國庫空竭 有違儲時之意 朴崙啓曰 今當飢賑濟 亦不可廢 陳米豆可不給乎 雖不及前數 量宜換爲便 上曰然 因命之剛曰 其以陳米豆六百斛 於寡寡孤獨殘廢疾者 以時價貿易¹⁹⁾

이라 한 바처럼 國庫의 空竭이 예상되고 穀物儲置 노력에 위배되는데도 불구하고 陳米豆 600 斛을 저화로 무역케 한 데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곡방출량이 전에 비해 줄어들고 楮貨不用說이 나돌게 됨에 따라서 저화 1 장=미 3 승이라는 楮貨價의 하락현상이 초래되고²⁰⁾ 이에 대해 정부는 저화유통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저화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命國用凡物 皆以楮貨買賣 不得已須用布米 啓聞施行²¹⁾

國用凡物은 모두 저화로만 매매토록 하되 부득이해서 米·布를 써야 할 경우에는 啓聞 施行토록 하였다. 아울러 別例所貢物 경우에는 陳米豆, 布貨, 楮貨로 무역 상납토록 조치하여²²⁾ 정부와 민간사이에 저화사용의 기회를 넓혔다. 그러나 저화의 不用現象은 여전하여 戶曹叅判 安純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興行術을 정부 6 조와 상의하여 마련토록 하였는데²³⁾ 그 중

楮貨興用條件 申明舉行 嚴加考察 凡物價 京市署訪問告于戶曹 並依時價出榜買賣 而民間楮貨多則賤 小則貴 隨其貴賤 以時歛散 從之²⁴⁾

와 같이 물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여와 저화의 적절한 歛散策이 강구되었다. 물가에 대한 정부의 告示價 결정은 3개월마다 한번씩 행하기로 하고 이 고시가를 위배했을 적에는 司憲府에서 엄중히 다스리기로 하였다.²⁵⁾ 하지만 자연재해의 잇따른 발생은 이러한 정부의 저화유통 노력을 번번히 좌절시켜 동 3년 4월에 곡가의 등귀와 저화가의 하락을 초래케 해

上以民飢 命戶曹出豐儲倉·軍資監陳米小麥 令窮民買之 是時楮貨一張 直米二升 上令給米一斗五升 小麥則三斗 民大悅 時京畿州郡倉庫 因賑貸罄竭 故貸以軍資米 京畿之民 載負者絡繹不絕²⁶⁾

19) 《世宗實錄》卷 3, 元年 4月 癸巳, 戶曹叅判 李之剛啓

20) 《世宗實錄》卷 5, 元年 8月 甲戌, 禮曹判書 許稠對曰

近者民間 喧言國家將不用楮貨 楮貨一張價米不過三升 此亦不可不慮也

21) 《世宗實錄》卷 7, 2年 閏正月 戊寅條

22) 《世宗實錄》卷 7, 2年 閏正月 戊戌條

23) 《世宗實錄》卷 7, 2年 2月 癸亥, 命戶曹叅判安純曰

今聞商賈不務用楮貨 予爲慮焉 其所以興行之術 議于政府六曹以聞

24) 《世宗實錄》卷 8, 2年 4月 乙巳, 戶曹啓

25) 《世宗實錄》卷 9, 2年 8月 辛丑, 戶曹啓

市價不平 令京市署 每三朔 一次改定市價 其亂法瞞官者 憲司料理 從之

26) 《世宗實錄》卷 11, 3年 4月 戊戌條

6 논문집

에서 처럼 저화 1 장의 等價가 미 2 승으로 성립케 하였다. 이렇게 곡물 흉작에 의한 민생의 파탄이 진행되자 豐儲倉, 軍資監의 陳米·小麥을 방출하여 저화 1 장 당 미 1 두 5 승, 소맥 3 두로 저화의 실제 교환가보다 높히 책정해서 곡물을 優給해 주었다. 이 경우 楮貨의 對米等價는 7.5 배로 上向된 것이다.

빈민구제를 위한 정부보유곡의 방출은 동 6 월에도 계속되는데²⁷⁾ 이러한 정부미 방출을 통한 저화에의 公信用 賦與는 저화에 대한 有用性을 환기시켜 일부 관리들로 하여금 정부보유 저화의 偷竊現象을 빚게 했다. 동년 10 월에

功臣都監使沈寶 私用紙一百卷 副使尹希夷私用楮貨三百張 事覺 令憲府鞠之²⁸⁾

功臣都監의 使 沈寶가 紙 1 백권을 私用했다거나, 副使 尹希夷가 저화 3 백장을 私用했다든가 한 사실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암시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동 4 년 7 월에 이르러 저화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점차 철회되는 것 같은데

京中米貴 民不聊生 其以倉庫陳米 聽賣楮貨一張 折米一升²⁹⁾

과 같이 흉작에 따르는 米貴現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저화 1 장 당 對米交換價를 미 1 승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 입장의 변화가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 지는 확실치 않지만 동 3 년 4 월의 교역내용과 비교해 본다면 매우 낮게 책정된 것이다. 그리고 저화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점차 해이해졌다는 사실은 各司奴婢에 대한 月料支給에서도 확인된다. 저화가 사용된 이래 이들에 대한 月料給與는 저화로만 이루어졌었는데 이 시기에 이르러 미곡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³⁰⁾ 이처럼 저화에 대한 정부의 支持가 약화된 것은 連年の 凶歉에 따른 극심한 米貴現象에 기인하는 것으로 백성들의 饑餓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최대 노력이 各司 奴婢月料를 미곡으로 지급한다거나 또는 최소한의 賑資穀을 보유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저화의 對米穀價를 현실화시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 속에서

時商賈皆不用楮貨 皆以米布買賣 物價踴貴 楮貨甚賤³¹⁾

이라 한 바 처럼 저화의 甚賤現象은 더욱 심화되어 갔다.

27) 《世宗實錄》卷 12, 3年 6月 庚戌, 命戶曹曰

霖雨太甚 米價湧貴 民生可慮 其以軍資陳米一萬石 買楮貨于民間 貧乏人 爲先給之

28) 《世宗實錄》卷 13, 3年 10月 戊申條

29) 《世宗實錄》卷 16, 4年 7月 癸亥, 傳旨曰

30) 《世宗實錄》卷 16, 4年 7月 丁巳

命諸司奴婢月料 給以米穀 自用楮幣 月料皆給楮幣 楮賤米貴 人甚苦之 至是以年飢給米 人便之

31) 《世宗實錄》卷 18, 4年 10月 丁酉條

Ⅲ. 楮貨 專用策의 變化와 楮貨 地位

1. 楮貨 專用策의 變化

저화통용에 대한 世宗의 입장 변화는 동 4년 10월에 엿보인다. 즉

上以楮貨民不興用 欲用銅錢與布幣 使金益精·鄭招 往議三議政 柳廷顯請堅行楮貨 不用者嚴刑 李原請行銅錢 鄭擢請用布幣³²⁾

와 같이 저화가 백성들 사이에 인기가 없어지자 銅錢, 布幣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사를 三議政에 논의케 한 것이다. 이 때 柳廷顯은 저화의 지속적인 行用과 그 不用者에 대한 嚴刑을 주장하고 나섰고, 李原은 동전의 통용을, 鄭擢은 布幣의 사용을 奏請하여 이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세종의 이러한 의사 표명은 그 裏面에 있어서 저화 강행을 위해 실시한 바 있는 규제책들이 外方의 飢寒民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³³⁾ 그리고

本國舊用布幣 晉山府院君河崙獻議曰 國家之所用於民者楮貨 而民之所納於國者米穀 則國可以富 且凶年則歛楮貨而發倉 豐年則散楮貨而歛粟 可使官民 太宗從之 乃立楮貨之法 至此官民 皆無所利 欲罷之 以太宗成憲 不敢遽改³⁴⁾

官民兩便이라는 입장에서 발행한 저화가 官·民 모두에 별이익을 주지 못한 데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결국 이 제안은 동 5년 9월에 錢·楮의 통행으로 變形, 決定되었는데³⁵⁾ 이 때 이 錢·楮兼行法이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臣環 窺見生財之道 爲國之先務 國制新立 錢楮兼行之法 是於裕國足民之道 可謂至矣 然而必廣鼓鑄之所 不惜銅愛工 然後國用裕而民用足矣³⁶⁾

32) 《世宗實錄》卷 18, 4年 10月 庚子條

33) 《世宗實錄》卷 18, 4年 12月 丁亥

先是楮貨日賤 其價至升米三張 故不用楮貨 以他物貿易者 籍其家 然犯罪者皆外方飢寒之人 富商大賈 無罹罪者 楮貨之賤 無異於前 故用錢之論 自此而起

34) 同 上

35) 《世宗實錄》卷 21, 5年 9月 甲午

乃會政府六曹 議鑄錢與楮貨通行

36) 《世宗實錄》卷 23, 6年 2月 癸丑, 行議軍 白環陳言曰

와 같이 鑄錢所의 확대, 銅의 지속적 공급 등이 선결되어야만 했었다. 적절한 동전 공급이야말로 錢·楮兼行의 요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진행된 동전주조는 어느 정도의 발행량을 확보하게 되자³⁷⁾ 동 7년 2월에 그 始用을 서두르고 布貨의 對米交易을 엄금하였다.³⁸⁾ 당시 저화 대 동전의 等價가 어떠한지는 확실치 않으나 동 3월 己卯條의 犯罪收贖法 중에서 今則答二十銅錢一百五十文 楮貨七十五張이란 내용과 동 4월 丙辰條의 在先贖罪 以錢文 楮貨 相半收納의 내용에서 저화 75 장=동전 150 문의 등가를 성립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저화 1 장의 가치는 동전 2 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동전이 始用되게 되자 이제까지 저화로의 수납이 강요되었던 범죄수속은

今則答一十銅錢一百五十文 楮貨七十五張 杖一百銅錢一千五百文 楮貨七百五十張 第以推之 則杖一百徒三年(下略)³⁹⁾

에서 보는 바 처럼 동전과 저화로 겸용하게 되고 外方 上納物에 대한 給價도 저화·동전 등으로 지급하게 되었다.⁴⁰⁾ 錢·楮兼用에 대한 세종의 당초 입장은 銅錢專用을 위한 임시적 경과조치로서 행한 것 같은데 이는

上謂諸臣曰 前日錢楮兼用 延訪於政府六曹而後行之 夫錢楮之設 始於宋朝 至于大元 欲兼用錢楮 未克而亡 大明亦未能兼用 前日議設錢幣之時 立兼用之法 予於其時 灼知不可兼用也 然於未鑄錢頒行之前 不用楮貨 則民益厭之 故姑立兼用之法⁴¹⁾

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中國 宋代에 나타난 錢·楮兼行法이 그 후 능히 겸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양 화폐의 兼用 不可를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銅錢 頒行 전에 楮貨를 不用하면 이에 대한 백성들의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될까 우려해서 그러한 과도기적 조치를 취하였던 것이다.

이제 동전을 頒行함에 따라 기왕의 전·저겸용책을 포기하고 본래 생각했던 銅錢 專用策을 추진해야 했었는데

37) 世宗 7年 4月 癸丑, 戶曹叅判 陸進恭의 進言 중에 頒布錢文 3천관, 在庫錢文 2만 4천여 관이란 사실에서 당시 鑄錢量이 총 2만 7천여관에 달함을 알 수 있다.

38) 《世宗實錄》卷 27, 7年 2月 戊午

始用銅錢 自是小民良法 以布貨易米者絕無 民之艱食 兆於此矣

39) 《世宗實錄》卷 27, 7年 3月 己卯, 刑曹啓

40) 《世宗實錄》卷 28, 7年 4月 丁卯條

41) 《世宗實錄》卷 28, 7年 4月 癸丑條

(上略)上曰 卿之言善矣 爲國之道 莫如示信 初以楮幣 爲寶而用之 今專用錢而空棄之 民之有楮幣者 豈無愁歎 給錢於民間 以收楮貨可矣⁴²⁾

동전을 專用한다고 해서 기존의 저화를 일시에 파기한다고 하면 저화 소지자에게 막심한 불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해결 방안으로서 給錢收楮策을 강구하고 아울러 司贖署에서 발행한 저화의 總量을 보고토록 조치하였다.⁴³⁾ 당시 戶曹는 專用錢文의 입장에서 錢價의 放任과 雜物의 私相貿易을 엄금하고 銅錢 1천관으로써 民間 散在楮貨를 환수하되 저화 1장=동전 1문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⁴⁴⁾ 이 案은 즉시 채택되어 동 7년 4월부터 銅錢專用的 길을 터 놓았지만 저화 1장=동전 1문의 결정은 동 3월의 저화 1장=동전 2문에 비해보면 저화에 대한 2배의 평가절하를 단행한 것이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上曰(中略)然恐楮貨多而錢尙少也 戶曹參判陸進恭進曰 今頒布錢文三千貫也 見留在官者二萬四千餘貫 臣臆意 以錢易楮貨 不過買錢一千貫也⁴⁵⁾

鑄錢량이 충분치 못해, 동전으로써 교역할 수 있는 저화의 양이 1천관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데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 때 5백관이 漢城府의 散在楮貨를 환수하는데 할당되었는데⁴⁶⁾ 이 액수로 교환할 수 있는 저화의 양은 50만장이 된다.⁴⁷⁾ 세종 8년의 한성부 인구가 10만 9천 3백 72명이라는 사실을 놓고 본다면⁴⁸⁾ 1인당 약 5장 가량의 저화보유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然恐楮貨多而錢尙少라는 내용으로⁴⁹⁾ 추찰컨데 당시 민간에 퍼져 있는 저화량은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銅錢專用在 결정되자 이제까지의 범죄收贖은

在先贖罪 以錢文楮貨相半收納 今改全用錢文 自今銅及錢文中 從自願 依定式收納 從之⁵⁰⁾

42) 同 上

43) 《世宗實錄》卷 28, 7年 4月 癸丑, 上曰
令司贖署 計會印楮貨之數 以聞

44) 《上揭書》卷 28, 7年 4月 癸丑, 戶曹啓
今依甲辰年(세종 6년) 十一月日受教 楮貨銅錢兼用 然民心未安 請除兼用楮貨 專用錢文 其錢價高下 一從民間時直 敢以雜物私相質者 依曾降教旨 一切禁止 民間散在楮貨 以銅錢一千貫 換收 納官楮貨一張 准錢一文 從之

45) 《世宗實錄》卷 28, 7年 4月 癸丑條

46) 世宗 7年 4月 甲寅에 民間散在의 楮貨를 조속히 收納하기 위한 방법으로 漢城府地域을 東·西·南·北部와 中部 및 城底 10里로 도합 5部로 나누어 各 1백관씩 分送하였다.

47) 銅錢 1貫은 一千文에 해당한다. 《太宗實錄》卷 11, 6年 3月 丁酉條 참조

48) 《世宗實錄》卷 40, 10年 閏 4月 己丑條

49) 《世宗實錄》卷 28, 7年 4月 癸丑條

50) 《世宗實錄》卷 28, 7年 4月 丙辰, 戶曹啓

와 같이 楮·錢 相半收納에서 銅·錢文 中 從願收納으로 개정되고, 민간 저화의 환수는 司贖署 獨掌收納 方針을 변경해서 漢城府 東部는 宗簿寺, 南部는 義禁府, 西部는 軍資監, 北部는 通禮門, 中部 및 城底 10里 이내 지역은 사섬서가 담당하여 환수하고, 外方은 留後司를 비롯한 전국 8도에서 조속히 수납토록 하였다.⁵¹⁾ 또한 各司奴婢身貢價와 기타 巫女業中稅 역시 錢文으로 수납하고⁵²⁾ 저화의 강제 통용을 위해 부담시켰던 民戶歲貢楮貨도 혁파하였다.⁵³⁾ 동 7년 8월에는 錢文代捧의 길을 보다 확대하여 工匠稅, 行商稅, 坐賈稅, 行廊稅, 新奈馬價稅를 두루 포함하였는데⁵⁴⁾ 이는 종전의 저화수납을 동전수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包容한 것이었다. 이외에도 逃亡奴婢役價 등이 錢納으로 바뀌었다.⁵⁵⁾

2. 楮貨 地位

세종대의 楮貨 專用策의 변화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저·전점용론의 대두에서 찾아 볼수 있다. 이러한 화폐정책상의 변화는 저화가치의 계속적 하락이라는 저화 지위의 불안정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정부의 收贖價에 까지 영향을 끼쳤다. 세종 4년 10월 戶曹은

永樂四年(太宗 6年)三月日 議政府受判 銅錢一貫 准五升布一匹 然其時楮貨十張計折之物 今則三四陪 輕重失中 自今收贖及計贖銅錢一貫 准楮貨三十張 從之⁵⁶⁾

에서 처럼 收贖價의 개정을 요구하면서 太宗 6년 3월에 제정한 동전 1관=저화 10장의 等價는 그 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동전 1관=저화 30장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태종 6년 시의 동전 1관이 五升布 10匹⁵⁷⁾ 楮貨 10장으로 折定되기 때문에 오승포의 가치가 3·4배로 상승한 현재에 있어서는 동전 1관에 대한 저화의 등가도 동전 1관=오승포 10필=저화 30

51) 《世宗實錄》卷 28, 7年 4月 甲寅條

52) 《世宗實錄》卷 28, 7年 6月 壬子, 戶曹啓

各司奴婢身貢收納之法 前此奴一口元貢正布一匹 餘楮貨二張 婢一口元貢正布一匹 餘楮貨一張 自今奴一口餘貢收錢一百文 婢一口五十文 其他巫女業中 亦依此例 從之

53) 《世宗實錄》卷 29, 7年 7月 丁亥, 戶曹啓

今除楮幣用錢幣 請除各道民戶歲貢楮貨 從之

54) 《世宗實錄》卷 29, 8月 丙戌條

55) 《世宗實錄》卷 31, 8年 正月 甲寅, 刑曹據漢城府所啓 雜訟決絕可行條件 與議政府諸曹同議啓

一. 逃亡奴婢役價 依匠人收稅例 楮貨一張 准米一年 每米一斗 准銅錢四十文 一年役價 徵銅錢一千四百十文 給還本主

56) 《世宗實錄》卷 18, 4年 10月 丙午, 戶曹啓

57) 註 56)에는 銅錢 1관=五升布 1필로 나타나 있지만 실제 《太宗實錄》卷 11, 6年 3月 丁酉條에 의하면 銅錢 1관=五升布 10필로 규정되어 있다.

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戶曹의 견해는 楮貨價 下落에서 발생하는 정부 수입의 상대적 감소를 최대한으로 억제코자 하는 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 후에도 저화는 날로 천해져서 저화 3 장=미 1 승에 이르고⁵⁸⁾

今之市肆 不用楮幣 而用他物者 窮治其罪 仍沒家產 以堅楮幣之法 然未聞富商大賈 犯法被刑 獨貧窮之民 每陷於罪 破蕩家產 予甚憫焉 楮幣之法 雖不可革 當此歲凶 民間貿易 姑聽其便 命下 民大悅⁵⁹⁾

와 같이 市肆에서의 楮貨利用도 극히 저조하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상거래에서의 저화이용을 강제하기 위하여 楮貨 不用者에 대한 강력한 重刑策을 취하게 되는데 그 시행과정에서 많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즉 犯法者는 빈궁민 뿐이고 歲凶에 따른 民生의 궁핍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민간교역에서의 저화이용을 계속 고집할 수가 없었다. 이에 上記 史料에서 보는 바 처럼 민간 거래에서의 유통수단은 백성들의 觀念에 따르도록 임시 허용하게 되는데, 동시기의 자료를 보면

命戶曹發京倉陳米二千石 陳豆一千名 買民間楮貨 以救饑乏⁶⁰⁾

에서와 같이 京倉의 陳米 2 천석, 陳豆 1 천석을 풀어 저화와와의 교역을 도모하고 그 交易價도 저화 1 장=미 2 승, 콩 4 승으로 優給하고 있어⁶¹⁾ 저화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여전하였던 것 같다. 당시 저화는

京中盲人獨女二十九人 擊鼓申訴曰 曾受還上 以貧乏 未能充納 願以楮貨代納 命戶曹從其所願⁶²⁾

盲人·獨女들에 이르기까지 널리 확산되어 있었는데 그 유통량의 절반가량이 漢城府에 몰려 있고⁶³⁾ 그에 비해 市肆에서의 이용은 매우 부진해서 楮貨價의 下落은 필지의 사실로 나타났다. 또한 國庫物과의 교역을 통한 저화유통 노력이 항구적이 아닌 임시적 조치에 불과해서 저화의 甚賤現象은 더욱 깊어날 갔다. 이러한 사정하에서 初造楮話 時 성립했던 저화 1 장=미 1 두, 저화 30 장=목면 1 필의 등가는 저화 1 장=미 1 승, 저화 100 장=목면 1 필로 나타나게 되고⁶⁴⁾ 동 4

58) 《世宗實錄》卷 18, 4年 12月 丁亥條

59) 《世宗實錄》卷 19, 5年 正月 戊戌, 上曰

60) 《世宗實錄》卷 19, 5年 正月 戊戌條

61) 《世宗實錄》卷 19, 5年 2月 辛未, 戶曹啓

民飢殺貴 請糶軍資監陳米豆 許民以楮貨貿易 一張價米則二升 豆則四升 從之

62) 《世宗實錄》卷 18, 4年 11月 辛巳條

63) 註 16) 參照

64) 《世宗實錄》卷 21, 5年 9月 甲午

議鑄銅錢 初造楮貨一張直米一斗 三十張直木綿一匹 至是楮貨甚賤 一張一升 百餘張一匹

년 10월의 楮貨 收納價 調整問題는 馬價, 巫女業中稅, 奴婢身貢價, 魚箭稅, 行狀稅 등의 項目에서 3배의 인상을 보게 되었다.⁶⁵⁾ 이와같은 저화의 不用, 甚賤現象은 동 5년 9월에 錢·楮兼用策을 입안케 했는데 이것도 銅錢專用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楮貨不用現象은 더욱 심화되어 갔고⁶⁶⁾ 특히 鑄錢原料를 확보키 위해 실시했던 歛銅策은 全階層과 全地域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 성격의 것이어서⁶⁷⁾ 백성들의 저화 不用現象은 더욱 깊어만 갔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저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점차 소극적으로 되어 갔는데

命永除威吉道鏡城 司宰監納大口魚連魚全鮑 濟用監納楮貨 因郡人前大護軍金天乙陳言也⁶⁸⁾

그 확실한 동기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濟用監에 所納해야 할 저화를 영구히 면제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저화를 유통시켰을 때에는 이의 전국적 통용을 위해 歲貢楮貨의 稅目を 신설해서 저화의 강제 수납을 기도하였는데 그 중 戶楮貨는

依戶曹受教 道內各官民戶楮貨一萬二千三百九十張 收價米四百十三石 以補義倉⁶⁹⁾

와 같이 그 중간에 미곡으로 代納되고 있었다. 환언하자면 各官民戶가 부담해야 할 저화 1만 2천 3백 90 장을 4백 13석의 미곡으로 代納하였는데 이러한 例는 全羅道 뿐만 아니라 忠淸道⁷⁰⁾ 平安道⁷¹⁾ 에서도 나타난다. 저화의 미곡대납은 세종 5년에

(上略) 有田則有租 有戶則有調 故本朝 因古制 始收常五升布 次收楮貨 歲癸卯(世宗 5年) 以工商 先將已物 納官 倍徵其價 於民有弊 乃除楮貨 只收戶米有差⁷²⁾

증전의 저화수납을 戶米收納으로 변경한 데에 근거한 것으로, 戶楮貨 收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外方의 楮貨 求得難을 틈탄 工商人들의 楮貨 先納과 후일 백성으로부터의 倍徵弊端을 일으키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是正 조치로 나온 것이다. 물론 이것이 義倉을 補完하고 民生을 이

65) 《世宗實錄》卷 20, 5年 6月 庚午條

66) 《世宗實錄》卷 25, 6年 7月 乙亥, 司贖署提調啓
楮貨本非民樂用之物 今因銅錢兼用之令 楮貨尤不行用 宜當速頒銅錢 以定民志

67) 《世宗實錄》卷 25, 6年 8月 丁未·己酉·庚戌·乙卯條 參照

68) 《世宗實錄》卷 26, 6年 10月 辛亥條

69) 《世宗實錄》卷 28, 7年 4月 丁卯, 全羅道監司啓

70) 《世宗實錄》卷 28, 7年 4月 庚申 忠淸道監司啓

依戶曹受教 道內各官民戶楮貨一萬三千三百二十八張 收價米四百四十四石 以補義倉

71) 平安道 경우에는 본래부터 戶貢楮貨가 없었는데 戶米收納이 강제된 것 같다. 그래서 《世宗實錄》卷 26, 6年 11月 丙戌條의 平安道監司啓(中略) 且道內人民曾無戶貢楮貨 今以價米收納未便(中略) 命依前例 除收楮貨價米와 같이 戶米代納이 免除되었다.

72) 《世宗實錄》卷 42, 10年 12月 己亥, 戶曹啓

롭게 하자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었지만⁷³⁾ 有田則有租 有戶則有調라는 古制에 의해 田租 외의 稅米收納은 삼가하고 있는 실정이고⁷⁴⁾ 各司貢物도 모두 民戶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터여서 戶楮貨의 폐단을 시정한다고 해서 戶米로 代納한다는 것은 백성들에 대한 濫徵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처럼 여러 목적을 내포한 戶米收納으로의 전환은 그 후 동 7년 4월에 이르러서 銅錢專用制의 채택에 따라⁷⁵⁾ 그 명분을 상실하고 이어서 동 10년 12월에 혁파되었다.⁷⁶⁾ 그리고 바로 前年인 동 9년에는 不用楮貨罪로 몰수한 개인의 재산을 모두 돌려줌으로서 저화유통 강행에 따라 나타난 백성과 국가 간의 불편한 관계를 일체 청산하고자 하였다.⁷⁷⁾

Ⅳ. 楮貨의 復用과 流通策

국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자 했던 銅錢 專用策은 그 이면에

前日群臣皆謂 楮貨民不樂用 鑄錢頒行 則民亦樂用 不如楮貨之無用也 雖不興用 其價不至如楮貨之賤 予信其言 革楮貨而行錢幣 今未數年 民不樂用 而其爲無用 與楮貨無異⁷⁸⁾

에서와 같이 동전을 鑄造·頒行하면 지화의 無用現象가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비록 그것이 興用되지 않아도 楮貨 其賤과 같은 양상은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전이 頒行된 지 수년이 지나도 백성들의 樂用現象은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無用之物로 전락되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동전의 不興用現象은 申商이 지적한 바 처럼

今我國京都有市 各道州郡 皆無市 雖有錢幣 幣者不得市焉 反以錢爲無用之物 民不興用 依中國之制 外方郡縣 皆開市則錢自興矣⁷⁹⁾

73) 《世宗實錄》卷 22, 5年 11月 丙戌, 右司諫 朴冠 等 上疏言

一. 有田有租 古之制也 田租之外 又出以米 古所未有 民戶楮貨 本以楮貨興行而立之 固非美法 雖革之可也 又何代出以米 以病民哉 且曰有補義倉 欲利於民 至愚之民 安知後日之利 而不怨當時之費乎

74) 同上, 《世宗實錄》卷 74, 18年 7月 甲寅條 參照

75) 《世宗實錄》卷 28, 7年 4月 癸丑條

76) 《世宗實錄》卷 42, 10年 12月 己亥, 戶曹啓

(上略)乃除楮貨 只收戶米有差 然各司所貢之物 皆出民戶 而泥古制 有戶有調之法 又收戶米 未便 請蠲戶米 從之

77) 《世宗實錄》卷 36, 9年 6月 己巳

命以不用楮貨坐罪各人沒官家財 並皆還給

78) 《世宗實錄》卷 38, 9年 10月 丙寅, 上曰

79) 《世宗實錄》卷 29, 15年 正月 壬申條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市場이 거의 없다는 데에 그 한 요인이 있었던 것이다. 즉 漢城府에만 市肆가 있고 各道州郡엔 전혀 없다는 상황하에서 동전의 無用之物과 不興用 現象은 예정된 결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동전이 흥용되지 못하고 無用之物로 변해감에 따라 기왕의 저화를 다시 사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게 되었는데 이 때 세종은 集賢殿 直提學 金汝, 李季甸을 불러 古制를 참고, 이에 대한 稟啓를 하도록 명하였다. 당시 李季甸은

泉貨之法 歷代所重也 我國專用布幣 其來久矣 至本朝以楮代布 以遵華風 甚美事也 但人心憚於改舊 不樂從新 故嚴立重法 以督其行 而少民怨咨 里巷之間 至有鈔出國鈔鈔之語 鈔鈔者 諺語貧乏之辭也⁸⁰⁾

이라 하여 我國이 布貨에 대신하여 저화를 채택한 것은 중국제도를 참작한 좋은 일이기에는 하나 인심이 옛것을 고치기를 꺼리고 새로운 것에 따르기를 좋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부가 嚴立重法으로 이의 行用을 강제하게 되니 백성들 간에는 원성이 일어나 里巷之間에 鈔出國鈔鈔라는 유행어가 나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然此特人心不習而憚之耳 非法不良也 行此之法 堅如金石 日月既久 則流行後世 可無弊也⁸¹⁾

인심이 새 제도에 익숙치 못한데서 그것을 꺼리는 것이지 제도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楮貨制를 金石과 같이 굳게 시행하면 후세에 유행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는 당시의 銅錢制 難行을 언급하면서 改錢用楮에 따르는 인심의 동요와 그 결과를 우려하여 도리어 鐵錢의 鑄造 通用을 주장하고 나섰다.⁸²⁾ 그는 저화 통용의 힘들음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楮幣 特半張紙耳 傳至幾人手 而上品爲中品 中品爲下品乎 國家又豈肯別立三品之價歟 民之犯禁 可前知也 民有犯禁 則不可不加刑也 今立嚴刑之法 則民之怨咨 與初行楮幣之時 何以異哉 且改法之時 人心之擾攘必矣⁸³⁾

와 같이 저화가 여러 사람의 수중을 경과하게 되면 楮貨 字體의 明白과 그 破毀度에 따라 上品, 中品, 下品이라는 三品현상이 발생되어 各己의 교환가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를 정부가 묵인해 줄 수 있겠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저화의 名目價(一定價)만을 고집해서 三品現象을 강력히 규제한다면 初行楮貨 때와 같은 백성들의 원성이 일어 날 것이고 그리고 저화를 다시 채택한다 해도 민심의 동요가 반드시 뒤따를 것이니만큼 이의 復用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피력하였다.

80) 《世宗實錄》卷110, 27年 10月 壬子條

81) 同 上

82) 同 上

83) 同 上

이러한 李季甸의 주장은 세종으로 하여금 左議政 申槩, 右議政 河演 등의 정부 고위대신과, 集賢殿 直提學 金汝, 李季甸을 합석시켜 鐵錢便否에 대한 보다 진지한 검토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이 자리에서 左議政 申槩를 위시한 거개의 사람들은 鐵錢의 難鑄를 표명하고 나섰는데 오직 李季甸만은

初行楮貨 改用銅錢 今又改爲楮 無乃變法輕數乎 昔宋文帝時 江夏王義恭 請改錢法 何尙之論違衆立法 何能久哉 不聽而改 未經旬時 其法果不行 今日改法 安知後日之不如此乎⁸⁴⁾

와 같이 국가의 專用貨幣上에서 처음에는 저화, 다음에는 동전, 그리고 지금에 와서 다시 저화로 채택한다는 것은 錢法의 변함이 너무 심한 것으로서 그 不行은 自明하다고 하여 鐵錢의 行用만을 고집하였다. 이에 비해 申槩 등은 절전의 難行을 거듭 주장하면서 저화를 復用하되 그 시행을 강제하지 않으면 전과 같은 폐단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저화의 재통용을 강조하였다.⁸⁵⁾

이처럼 銅錢의 無用之物化와 그 不興用現象에서 초래된 楮貨復用과 鐵錢行用に 관한 두 주장은 다음 달에도 계속 대립되었는데⁸⁶⁾ 이는 동 27년 12월에 이르러서 楮貨復用 쪽으로 기울어져 갔다. 당시 議政府는 戶曹의 稟啓를 기초로 해서

貨幣之用 代各不同 而本國稽諸古典 又倣上國之制 始用楮貨 行之有年 別無巨弊 特以銅錢 歷代所用 乃立楮幣兼用之法 民心未定 故又有禁行楮幣之令 專用銅錢 然銅非本土所產 見在之數不多 經費難支 誠爲可慮⁸⁷⁾

라고 하여 始用楮貨 時에는 그것을 행한지 수년이 지나도 별로 큰 폐단이 없었는데 중간에 楮·錢兼用法을 시행하고부터는 민심이 불안해지고, 근래 銅錢專用に 이르러서 그 원료의 外國所產에 따르는 鑄錢量 不足과 정부의 경비부족 현상이 발생된다고 하여 楮貨의 復用을 지지하였다. 아울러 楮貨 可行條件 8개 사항을 상주하여 세종의 재가를 받게 되었는데⁸⁸⁾ 그 내용은

- 一. 永樂年間 所造楮貨(太宗 10년 이후 발행된 저화)와 지금의 新造楮貨는 通用한다.
- 一. 宣德元年(세종 8년) 受教時 저화 1장의 折錢價가 40文이었는데⁸⁹⁾ 지금은 50文으로 酌定해 並用한다.

84) 《世宗實錄》卷 110, 27年 10月 壬子條

85) 《上揭書》卷 110, 27年 10月 壬子, (申)槩 等曰
此言似矣 鐵錢難行也 雖改楮貨 不峻其令 任其所用 終必無弊

86) 《世宗實錄》卷 110, 27年 11月 庚寅條

87) 《世宗實錄》卷 110, 27年 12月 癸卯條

88) 同 上

89) 본 기사에는 41文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40文일 것임. 동 8년 1월 甲寅條에 의하면 저화 1장=동전 40문으로 나타나 있다.

- 一. 永樂 20 年(세종 4 年) 受教時 筭 10 의 收贖價는 동전 6 백文으로 저화 6 장에 准하였는데 지금은 저화 12 장으로 酌定하고 勿收布貨한다.
- 一. 徒이하의 죄는 楮貨興用 간에 尊卑를 물론하고 自願收贖케 하되 楮·錢으로 聽從所納한다. 무릇 徵稅, 和賣 등 官衙에 所納하는 것은 楮·錢으로 통용하되 所收錢文은 京外官에서 擅用하지말고 모두 濟用監에 보낸다.
- 一. 祿俸·頒賜 錢文은 저화로 대체하고各司의 柴炭·菜蔬·燈油·筆墨·車錢은 저화로 皆用한다.
- 一. 楮貨紙는 諸道州縣으로 하여금 司贖署에 休紙를 납부케 하고 前例에 의해 造作한다.
- 一. 저화가 柔軟하고 字印이 明白하면 사용하되 破毀되어 사용할 수 없으면 司贖署에 還納, 2 장에 新楮貨 1 장을 환급한다.
- 一. 商賈之徒가 錢文으로 潛隱貿易他境하면 客館金銀貿易例에 따라 大憲鑑하고 有能捕告者는 犯人家產으로 充賞한다.

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저화 복용은 순전한 楮貨專用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전과의 겸용 즉 楮·錢兼用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 저화 대 동전의 等價를 1:50 으로 하고 있는데 동 8 년의 교환가가 1:40 이었다는 사실과 비교해 본다면 동전에 대한 楮貨價의 비중이 25 %나 인상된 것이다.

그리고 收贖價에서 세종 4 年 시의 筭 10 =저화 6 장이던 것이 이 시기에 와서 저화 12 장으로 인상된 것처럼 보이는데 동 4 年の 실제 수속가가 태 10 =저화 18 장이었고⁹⁰⁾ 그 후 동 7 년에 저화 75 장·동전 150 문으로 조정되었다가 다시 동전 200 문(저화와 相半收納한다면 동전 100 문·저화 50 장이 됨)으로 개정되는 것에 비해 본다면⁹¹⁾ 도리어 收贖價의 下向調整이 이루어 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백성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한편 徵稅·和賣上에서의 收納錢文을 모두 濟用監에 보내게 한 사실에서 동전 유통량의 점차적 감소를 예상할 수 있고,各司의 所要物資 代金과 祿俸·頒賜를 오직 저화로만 사용케 한 사실에서 정부의 경비지출 부문에서는 저화만을 강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민간교역에서는 저화이외에도 銅錢, 布貨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市准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동 27 年 12 월에 議政府는 市准法의 개정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市准之法因物時直 平其高下 以便民情 然雜物之價 非一二人所能悉知 京市署官及分臺監察 每當市准之時 違令一二商賈 臆度定價 又不如意 勸令增減 狡詐之徒 或乘時要利 任情高下 或通牙行 共爲奸計 至於估計贖物 生死關焉⁹²⁾

90) 世宗 4 年 10 月 丙午條를 보면 동전 1 貫(1000 문) =저화 30 장으로 折定하고 있어 筭 10 의 贖錢 600 文은 저화 18 장으로 된다. 이 사실은 世宗 7 年 3 月 己卯條에서 확인된다.

91) 《世宗實錄》卷 27, 7 年 3 月 己卯條

92) 《世宗實錄》卷 110, 27 年 12 月 壬子條

과 같이 물가동향을 파악하기 힘든 점과 市准過程에서 빚어지는 불합리한 가격 책정, 그리고 그에 수반된 狡詐之徒들의 모리행위, 아울러 各種 非理의 발생 가능성을 열거하면서 모든 物種의 品秩과 時價의 輕重은 戶曹와 富商大賈가 상호 의논해서 永久的으로 또는 1년마다 한번씩, 아니면 3개월에 한번씩 정하자고 주장하였다.⁹³⁾ 그리고 이러한 가격의 결정은 각 물품의 성격에 따라

其布貨皮鐵衣服柴木等價 雖隨時或有輕重之差 亦不甚懸絕 皆有一定之價 並以布貨·錢·楮定價 異土所產銅鐵丹木白礬藥材等物 京市署報戶曹 隨時定價 如朝夕變價菜蔬魚肉細碎食物 依前例 京市署市准 從之⁹⁴⁾

와 같이 가격이 수시로 변동하더라도 그 차이가 심하지 않은 것, 즉 布貨·皮·鐵·衣服·柴木 등은 一定價로 묶이고 그 가격은 포화, 동전, 저화로 표시하고 외국산물의 銅鐵·丹木·白礬·藥材 등은 京市署가 수시로 定價하여 戶曹에 보고토록 하며, 朝夕으로 값이 변하는 菜蔬·魚肉·細碎食物은 前例에 따라 경시서에서 市准하자고 주장하였다.

물가통제에 대한 이러한 議政府의 견해는 즉시 채택되는데 여기서 민간교역 수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전과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楮貨專用이나 銅錢專用 시에는 專用貨幣 외의 유통수단은 일체 거부한 데 비해 이제 楮·錢兼用이라고 해서 저화·동전 수단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布貨의 이용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저화전용과 동전전용 시에 발생된 각종 부작용을 경험한 데에서 나온 것이었다.⁹⁵⁾

저화복용 可行條件 중에는 楮貨 破毀度에 따라 舊楮貨 2 장을 新楮貨 1 장으로 교환해 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楮貨價 維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저화가 전용화폐로 유통되었을 당시 이의 名目價는

然用楮之時 臣親聞之 字有明白 暫不疲軟者爲上品 價米五六升 暫至疲軟者爲中品 價米三四升 其疲軟破毀者爲下品 或直一二升 或至不直一升者 非其官之定價 其勢然也⁹⁶⁾

저화 자체의 疲軟과 破毀에 따라 上·中·下品으로 나뉘어 각기의 等價가 성립되었는데 이는 정부에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 품질에 따르는 백성들의 選好度에 결과한 것이었다. 이처럼 정부에서 책정한 名目價가 일반 상거래에서 그대로 준용되지 않고 세가지의 가격으로 각각

93) 《上揭書》卷 110, 27年 12月 壬子

今後凡物 品秩及時價輕重 戶曹聚富商大賈 互相辨問 或永爲定價之物 或一年或三朔

94) 《世宗實錄》卷 110, 27年 12月 壬子條

95) 世宗 27年 10月 壬子條에서 李季甸은 臣又謂貨幣 不可制一定之價 亦不可專用貨幣 而禁他物之兼用也 라고 전제하고 이와 관련된 실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96) 《世宗實錄》卷 110, 27年 10月 壬子條

동행되자, 이제 저화를 다시 통용함에 있어서 그 명목가(표시가)의 고수를 포기하고 저화의 二重價를 정부 스스로가 설정함으로써 민간에서의 저화통용 實狀을 그대로 용인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저화에 대한 公信用을 크게 손상시키는 것이고 나아가 이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를 적지않이 약화시키는 것이기에 저화 不用現象은 더욱 심화되어 갔다.⁹⁷⁾

저화복용 후에 정부에서 강제한 徵稅・收贖上에서의 저화수납책은

楮貨復立之時 興用之策 曲盡布置 而各衙門官吏 不顧大體 先毀國法 使民間不得興用 甚爲不可 自今如前折納布貨等物者 及不從自願強徵銅錢 不用楮貨者 令納者告于本曹 啓聞論罪⁹⁸⁾

에서 처럼 정부관아에서 먼저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저화 대신 布貨와 같은 現物로 收拂함으로써 정부가 의도한 저화유통 기도를 무산시키고 納稅를 통한 백성들의 저화이용 기회를 봉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楮貨 收贖價의 하향조정과 저화의 자연스런 興用을 기대하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에 파생된 국가재정의 수입감소를 막기 위해서 現物로의 수납이 만연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別立都監 凡各司收贖徵關 悉令送于都監何如⁹⁹⁾

都監을 別立해서 각 관아의 收贖・徵關을 모두 이 곳으로 보내자고 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특히 한성부 경우에는 商賈들의 行狀稅를 수납하는 과정에서 만약 저화로 납부하는 자 있으면 行狀 발급을 지연시켜서 雜物로의 수납을 은연 중 강요하는 바람에 徵贖 등의 事務는 모두 別立都監이 관장토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¹⁰⁰⁾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現物에 대한 楮貨價의 상대적 하락에 따라

各司使令等 徵督時不用楮貨 折納雜物者及潛受雜物 私換楮貨納官者 亦論以制書有違¹⁰¹⁾

백성들로부터는 실질가치가 높은 現物로 일단 수납하고 그것을 上級官衙에 다시 납부할 때는 소정의 저화만을 송부함으로써 그 사이에 생기는 차액을 착복할 수 있다는 즉 모리행위의 가능성으로 인해서 이러한 現物收納 현상이 성행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정부관아의 저화수납 실정이 극히 부진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楮貨

97) 《世宗實錄》卷 123, 31年 正月 戊申

世子視事後詣闕(中略) 宣上旨曰 厥初造楮幣之意 欲以通有無 且利權在於上也 我太宗之時 用楮貨 未久而罷 近日復用楮幣 慮不興用 欲設禁防 政府曰 不必立法 自然興用 今聞民不樂用 如之何

98) 《世宗實錄》卷 113, 28年 8月 乙卯, 議政府據戶曹呈啓

99) 《世宗實錄》卷 123, 31年 正月 戊申, (左議政)河演曰

100) 《上揭書》卷 123, 31年 正月 戊申, (左叅贊) 鄭茶曰

101) 《世宗實錄》卷 123, 31年 3月 丙戌, 議政府據戶曹呈啓

不用과 관련된 當該官·行首官은 制書有違律로 並論하고, 그 중 功臣子孫·議親은 收奪告身, 堂上和 提調는 知情不禁者로 과직케 하였다. 外方守令과 首領官은 京中各司의 官例에 의해, 觀察使는 提調例로 論罪하고, 各司使令 등은 制書有違로 그리고 그 全家는 邊방에 入居케 하는 등 전례없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¹⁰²⁾ 그리고 동 31년 1월에 논의된 바 있었던 수납저화의 濫用을 방지하기 위해서

自今徵贖楮貨 告于堂上 卽入官庫 如前私用者 計贓論罪(中略) 各司及開城府 每月季 將所收楮貨之數 移文憲府 外方各官 亦依上項例報監司 每月季 移文憲府 以憑後考¹⁰³⁾

와 같이 自今의 徵贖 楮貨는 堂上에 보고하는 즉시 國庫에 들이도록 하고 아울러 京中各司·開城府는 매월 말에 그 所收楮貨의 數量을 司憲府에 移文도록 하였다. 그리고 外方各官은 中央의 例에 따라 監司에 보고하고 매월 말 司憲府에 移文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外方에서의 楮貨興用을 위해서는

且外方楮貨 出處無由 興用爲難 監司守令將官中不用故紙 隨其多少 逐年上送 以京中各司所在楮貨量數分送 民間從自願買賣 使之播用(中略) 從之¹⁰⁴⁾

와 같이 저화의 出處無由에 따르는 저화 不用現象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방관아의 不用故紙를 상송케 하고 대신 京中各司의 所在楮貨를 분송함으로써 지방민의 저화이용을 원활히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楮貨 興用策은 정부의 收贖·收稅¹⁰⁵⁾와 같은 收納部門과 祿俸·頒賜·各司 所要物資의 代金支拂과 같은 支出部門에서만 적용되고, 일반 상거래에서는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유통책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한 바의 저화홍용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¹⁰⁶⁾ 더우기

昔太宗時 平安道蕃積百萬餘石 及予卽位之初 已告匱 迨至于今 連歲飢荒 官倉空竭¹⁰⁷⁾

太宗代의 平安道 비축미가 1백만여석에 달하던 것이 세종 즉위초에 이미 匱乏現象을 보이고 나아가 연년의 기황에 따르는 官倉空竭 現象이 대두됨에 따라 各司奴婢身貢, 水鐵匠, 經師, 巫

102) 同 上

103) 同 上

104) 《世宗實錄》卷 113, 28年 8月 乙卯條

105) 이 시기의 收稅는, 李鍾英〈上揭論文〉 p.326에서 밝힌 바처럼 工匠, 商賈, 行狀, 奴婢身貢과 같은 一部 稅納에만 국한되었을 것이다.

106) 《世宗實錄》卷 123, 31年 3月 丙戌條

107) 《世宗實錄》卷 117, 29年 9月 庚寅條

女 등을 대상으로 한 收稅는 自願納穀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되었다.¹⁰⁸⁾

이러한 제반 상황에서 일반 백성들은 기존의 유통수단인 布物로써 필요물자를 구입해야 했었고¹⁰⁹⁾ 관리들의 저화수납 기피행위를 막기 위한 저화 흥용책도

前此楮貨興用之法 詳盡無餘 自復用以後 如舊不樂興用 誠爲可嘆 大抵貨財 或散於民 或還於官 庶幾出入流通 公私兩便 官吏等並不奉行成法(中略) 因此一出於官 更不復入 其在民間 至爲賤物 人不樂用¹¹⁰⁾

와 같이 有名無實化 되어 감에 따라 저화는 나날이 賤物化 되어 갈 수 밖에 없었다.

V. 맺 음 말

지금까지 世宗代의 저화유통 문제와 관련해서 세종초기의 저화 유통상황과 흥용책, 그리고 저화 甚賤現象에 따르는 楮貨 專用策의 변화와 저화지위 문제, 이어서 저화의 復用問題와 그 유통책을 살펴 보았다. 이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종대 초기의 저화유통은 태종대의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인 저화 동용책의 결과로 어느 정도의 日常的 流通을 보이게 되지만 태종말과 세종초에 到來한 연이은 凶歉과 기근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그 통행상에서의 제약을 받게 되었다. 즉 京中商人들은 저화 대신 현물로 교역하는 양상을 보이고 지방은 저화의 부족과 지방관아의 특수사정이 겹쳐 이의 원활한 유통이 저지되었다.

또한 저화가 일상적인 통용을 보이긴 했어도 유통수단으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부의 계속적인 관심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당시 정부는 흥작에 따르는 빈민구휼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빈민구제의 효과와 저화 유통 기도를 자연스럽게 해결하고자 했는데 이는 정부미와 민간저화의 상호교역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곡방출량의 점차적 감소와 저화 불용설이 떠돌게 됨에 따라 이러한 정부의 저화유통 노력은 일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저화유통에 대한 백성들의 의구심을 불식하기 위해 모든 國用物의 매매를 저화로 하도록 하고, 別例所貢物은 陳米豆, 布貨, 楮貨로 貿易 上納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물가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저화의 적절한 歛·散策을 강구하였다.

108) 《世宗實錄》卷117, 29年 8月 甲申, 議政府啓
平安道軍需不足 不可不慮 請以其道住居 各司奴婢身貢及水鐵匠經師巫女等稅 自願納穀者 依時直收納(中略)從之

109) 《世宗實錄》卷125, 31年 7月 丙申, 議政府啓
明年 科擧式年 當春外方生從 咸集京都 賣布資糧 必致穀貴 請於秋節試取 從之

110) 《文宗實錄》卷6, 元年 2月 庚午, 議政府啓

그러나 이러한 저화 홍용책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동 4년 米貴現象이 발생되었을 때 정부방출미에 대한 저화의 對米交易價를 종전보다 낮게 책정했다든가 그리고各司奴婢의 月料를 저화에서 미곡으로 전환해 지급했다든가 한 사실이 나타나고 보면 저화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점차 소극화되고 있음과 그 결과 저화의 심천현상이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음을 규지할 수 있는 것이다.

저화통용에 대한 세종의 입장 변화는 동 4년 10월에 錢·布兼用 의사의 표명에서 비롯된다. 그 이면에는 저화 강행을 위해 실시한 각종 규제책이 外方의 飢寒民 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官民兩便이라는 입장에서 발행한 저화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楮貨價의 계속적 하락양상만을 보인 데에서 유발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대신들의 견해는 楮貨, 銅錢 또는 布幣의 行用을 각기 주장하여 그 결론을 얻지 못하고 동 5년 9월에 이르러서 錢·楮兼用으로 변형, 결정되었다. 하지만 이 錢·楮兼用策도 실제로는 銅錢專用을 위한 임시적 조치로서 銅錢頒行 전에 저화를 不用하면 이에 대한 백성들의 기피현상이 보다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나온 것이었다. 이제 동 7년 4월 동전반행이 이루어 지자 동전전용과 더불어 民間散在의 저화를 환수하기 위한 給錢收楮策이 마련되었는데 이 때 동전 대 저화의 교환비를 1:1로 정한 것은 그 鑄錢量이 충분치 못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서 전·저겸용시 마련한 2:1의 등가에 비해 銅錢價의 2배 상승을 가져왔다. 아울러 동전 전용책을 추진함에 따라 종전의 저화수납을 강제했던 부분들을 모두 동전수납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저화 전용책의 변화 속에서 저화는 계속적인 심천현상을 보여 동 4년 12월에 저화 3장이, 미 1승에 해당될 정도로 그 시세가 폭락하였다. 당시 저화는 盲人·獨女에 이르기 까지 널리 확산되고 있었는데 저화유통량 중의 절반가량이 漢城府에 몰려있고 그러면서도 市肆에서의 이용은 극히 부진하였기 때문에 저화가치의 하락은 필연지세가 되었다. 더우기 연흥에 따르는 민생의 궁핍이 예상되어 이제까지의 저화전용을 포기하고 유통수단에서의 일시적인 자유방임책을 전개하게 된 것은 저화 홍용상에 있어서 일대 후퇴를 가져온 것이었다. 그리고 정부 보유미의 和賣를 통하여 教貨의 효과와 저화통용의 실효를 얻고자 한 조치는 항구적이 아닌 일시적 성격에 지나지 않아 저화홍용에 하등의 도움을 주지 못하였고, 나아가 저화의 전국적 유통을 위해 강제했던 戶楮貨가 동 5년부터 戶米로 代納됨에 이르러선 유통계에서의 저화지위는 이미 그 존재의의를 상실치 않을 수 없었다.

당초 동전전용을 채택하게 된 연유에는 동전이 저화와 같은 無用之物化와 심천현상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전이 頒行된 지 수년이 지나도 그러한 기대감을 충족시킬만한 어떠한 조짐도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저화통용 때와 같은 동일 양상이 반복되자 동 27년 10월에 기왕에 통용했던 저화의 채택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이 때 세종은 李季甸 등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연구 검토를 지시 하였는데 당시 李季甸은 저화자체의

破毀度에 따라 그 名目價가 세가지로 나타나는 三品之價 現象을 예로 들면서 저화의 명목가 유지가 어려움을 말하고 아울러 變法에 따르는 민심의 동요를 거론하면서 鐵錢의 鑄造·行用을 주장하였다. 이 鐵錢行用論은 한동안 楮貨復用論과 대립 양상을 보였지만 그 결과는 楮貨復用 쪽으로 결정되었다.

저화복용이 이루어진 후 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마련한 可行條件을 보면, 당시의 저화 복용이 純全한 楮貨專用으로의 환원이 아니라 銅錢과의 兼用 즉 楮·錢兼用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저화 대 동전의 等價를 종전의 1:40에서 1:50으로 개정하여 동전에 대한 저화의 지위를 상승시키고, 徵稅·和賣上에서의 收納銅錢을 모두 濟用監에 보내 동전의 유통량을 점차적으로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면, 楮·錢兼用이라고 표방은 했지만 실은 저화통용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祿俸·頒賜 등과 같은 정부의 경비지출 부분에서 저화 사용만을 강제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犯罪收贖上에서 笞10에 대한 收贖價를 종전의 저화 75 장·동전 150 분에서 저화 12 장으로 하향 조정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고, 나아가 舊楮貨를 新楮貨와 2:1로 교환해 줌으로써 저화의 名目價만을 고집하지 않고, 민간에서의 저화통용 실상을 어느정도 용인하려는 정부의 탄력적 입장을 밝혔다. 또한 市准法을 마련해 민간에서의 楮貨, 銅錢, 布幣利用을 모두 허용하였는데 이는 楮貨 또는 銅錢專用 時에, 그 專用貨幣의 강제적 통용에서 유발된 민간교역의 침체와 민생에의 위협을 이미 경험한 데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저화홍용 노력에도 불구하고 對民行政을 직접 담당한 일선 官衙에서는 徵稅·和賣上에서의 錢·楮收納을 기피하고 布貨와 같은 現物로의 수납을 강요하여 納稅를 통한 백성들의 저화이용 기회를 봉쇄하고 있었다. 이는 저화의 자연스런 興用을 기대하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楮貨收贖價의 하향조정 그리고 楮貨價의 하락에 따르는 國庫收入의 상대적 감소를 최대한으로 막아 보고자 한 데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現物에 대한 저화가치의 상대적 하락에 따라 백성들로부터는 실질가치가 높은 現物로 일단 징수하고 上級官衙에 납부할 때는 법규에 규정한 일정액의 저화만을 上送함으로써 그 간의 차액을 노리는, 일종의 謀利行爲의 가능성에서 현물수납이 성행하였다. 이에 국가에서는 이러한 저화수납 기피 현상을 불식시킬 필요성에서 강력한 규제조치를 마련, 시행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여전하였다. 더우기 平安道 경우에는 年凶에 따르는 備蓄米의 空竭로 말미암아 楮貨收納 部門을 自願納穀으로 전환해야 할 형편이어서 楮貨興用은 이미 有名無實化 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기존의 유통수단인 布物으로써 필요물자를 구득해야만 했고 그와 관련해서 저화의 심천현상은 더욱 깊어만 갔다.

— Summary —

Circulation policy of Chuwha during King Sejoing's period.

In-hyeog Kwon

In the first half of King Sejong's period, the corn prices were rising and Chuwha (paper-money) lacking real value turned to be useless due to the successive lean crops and famine.

To the efficiency of poor relief and circulating Chuwha, the Authority ordered to exchange kingdom owned grain for civil Chuwha, however this temporary measure could not be settled.

For the public welfare and the rich state of public finance, the Authority designated coin as the sole currency.

Owing to the shortage of raw materials and applicable market-places, the Royal Authority attempted the usage of both chuwha and coin.

But in the collecting course of tax, the Authority forced in kind like cloth instead of chuh-wha and as the peasants also dealed in kind, Chuh-wha slowly disappeared from the currency circulation.